

인천지방법원 2022. 10. 6 선고 2022가단20253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유 담당변호사 전용우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관주

변 론 종 결 2022. 9. 1.

판 결 선 고 2022. 10. 6.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0. 3. 3.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D(주민등록번호 1 생략)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E(주민등록번호 2 생략)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에 관한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및 D의 화해권고결정 미이행

1) D은 2008. 3. 4. 주식회사 F(이하 '소외 F은행'이라 한다)과 여신한도금액을 250,000,000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았다.

2) 원고(당시 상호는 'G 유한회사'이었다)는 2012. 6. 25. 소외 F은행으로부터 D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2. 12. 5. D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3) 원고는 2016년경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위 양수금 원리금 390,778,645원 중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단102403).

4) 위 법원은 2016. 5. 27. 'D은 2016. 6.부터 2021. 5.까지 60회에 걸쳐 원고에게 매월 말일 500,000원을 지급하되, 위 분할지급금의 3회분에 달하는 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50,000,000원에서 기지급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과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 화해권고결정은 원고와 D 모두 이의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5)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6. 6.부터 2016. 10.까지는 매달 말일에 500,000원을 변제하였으나 2016. 11. 말일에는 300,000원만을 변제하였고 이후에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D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1) D은 2019. 12. 5. E으로부터 인천 서구 H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20. 1. 31.부터 2022. 1. 30.까지, 임대차보증금 32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320,000,000원 중 256,000,000원은 주식회사 J(이하 'J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지급하였다.

3) D은 2020. 3. 3. 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중 J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 256,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4,000,000원 부분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그 무렵 임대인인 E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D의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D의 유일한 재산이므로 D이 피고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로써 위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는바,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D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E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D은 2016. 11. 말일에 300,000원만을 변제한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분할지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2017. 1. 말일에 이르러 위 화해권고결정이 정한 기한이익 상실의 조건인 3회분(2016. 11. 말일부터 2017. 1. 말일까지 3개월분)의 지급을 지체하게 되었다.

따라서 D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50,000,000원에서 기지급 금액 2,8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 4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말일 다음날인 2017. 2. 1.부터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원고는 D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일인 2020. 3. 3. 기준 원금 47,200,000원 및 지연손해금 36,431,693원[$= 47,200,000\text{원} \times 25\% \times (3\text{년} + 32\text{일}/366\text{일})$, 원 미만 버림] 합계 83,631,693원의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채무자의 사해의사

1)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 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2) 갑 제6 내지 8,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은 2020. 3. 3.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에 대한 채무와 더불어 J은행에 대한 신용대출채무 30,000,000원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D이 2020. 3. 3. 위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D은 그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1. 16. D이 J은행에 대한 256,000,000원의 전세자금대출을 신용보증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미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전부를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그 효력이 없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전부를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채권양도는 전세자금대출 256,000,000원에 대한 신용보증 구상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양도담보로서 담보목적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자체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64,000,000원에 관한 D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나아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2. 1. 25. D은 J은행에 위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을 전액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중 전세자금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64,000,000원을 실제 부담한 사람은 D이 아니라 피고이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피고가 자신이 부담한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계좌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중 64,000,000원이 이체된 사실(2019. 12. 5. 5,000,000원, 2019. 12. 10. 5,000,000원, 2020. 1. 6. 20,000,000원, 2020. 1. 30. 34,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보증금 320,000,000원 중 계약금 10,000,000원의 지급기일은 계약 당일인 2019. 12. 5.로(다만 실제로는 2019. 12. 5. 5,000,000원, 2019. 12. 10. 5,000,000원이 각 지급되었다), 잔금 310,000,000원의 지급기일은 2020. 1. 31.로 각 정하여진 사실, D은 2019. 12. 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9. 11. 22. J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 30,000,000원을 받은 다음 2019. 11. 27. 피고의 계좌에 그 전액을 입금하였고, 이후에도 피고의 계좌에 2020. 1. 6. 4,000,000원, 2020. 1. 10. 12,000,000원을 각 입금하였으며, 2020. 2. 9. 6,000,000원, 2020. 2. 11. 6,000,000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계좌에서 이체된 64,000,000원은 D의 자금을 원천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와 같은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 중 64,000,000원을 실제 부담한 사람은 D이 아니라 피고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수익자의 악의

피고는 D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선의 항변을 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더라도 D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D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라는 사실에 관하여 피고의 일방적인 진술이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D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E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양승우

